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서삼석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
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 의원)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삶의질위원회에 ① 보험·통신 등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등을 관

리·감독하는 “금융위원장”, ② 도서·산간 지역의 서비스 차별에 대한 시장 왜곡 시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장”, ③ 정부의 재정정책과 인구정책·지역균형발전 등 미래전략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장”을 삶의질위원회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무총리는 삶의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므로, 현재도 국무총리가 해당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